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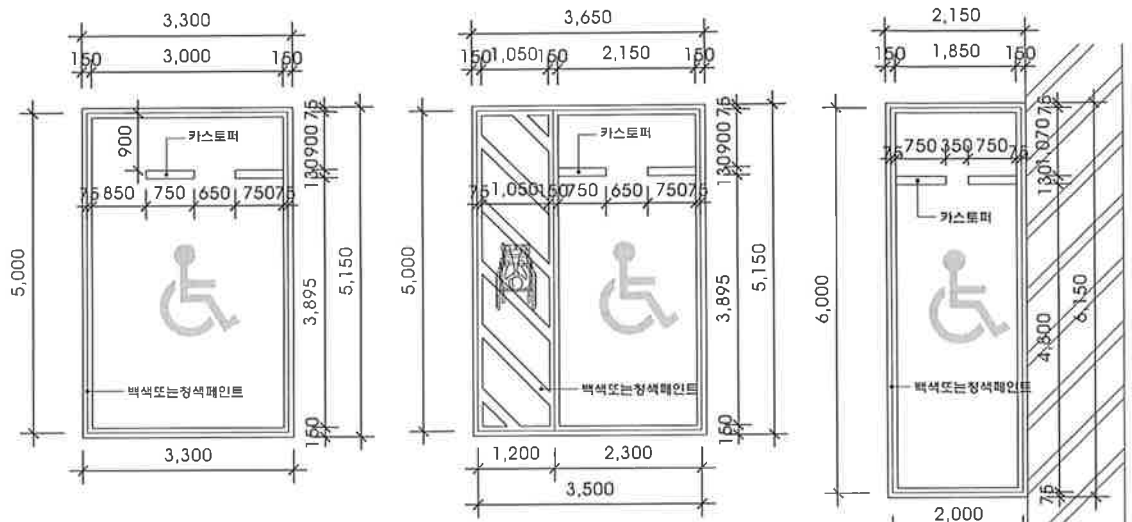
구분	1.매개시설	항목	1.2 장애인전용주차구역	B-122-32
----	--------	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

세부항목	1.2.2 주차공간
------	------------

- 1)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.3미터 이상,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평행주차형식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,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2)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,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.
- 3)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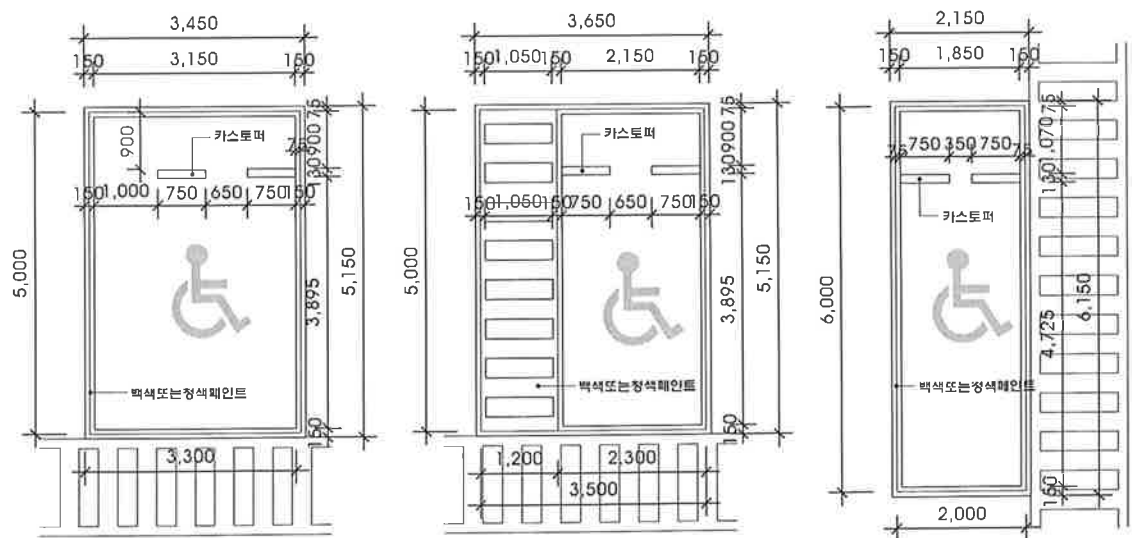
SCALE : 1/100

TYPE 01 - 장애인전용 주차구역



\*평행주차인 경우 반드시 보행통로에 접해서 설치.

TYPE 02 - 장애인전용 주차구역



\*평행주차인 경우 반드시 보행통로에 접해서 설치.

구분	1.매개시설	항목	1.2 장애인전용주차구역	B-123-35
----	--------	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

세부항목 1.2.3 유도 및 표시

- 1)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.
- 2)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.
  -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.7미터, 세로 0.6미터로 하고,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.5미터로 한다.
  -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
    -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.
    -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    -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00-0000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TYPE 03-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 표지판

SCALE : 1/10

